

## 실손의료비보장 요율변경 특약

제 1조 [ 적용범위 및 효력 ]

제 2조 [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

제 3조 [ 보험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 4조 [ 준용규정 ]

# 실손의료비보장 요율변경 특약

## 제 1조 [ 목적 ]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요율 변경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

① 이 특약은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에 체결된 유효한 계약(다만,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추가약관'에 따라 갱신전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에도 불구하고 갱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소정의 상품으로 갱신한 계약은 제외)(이하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이라 합니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적용기간은 해당 계약의 차회 갱신도래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차회 갱신도래일 이후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3조 [ 보험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부가일 이후부터 해당 계약의 보험료가 해당 계약이 갱신된 시점과 동일시점에 갱신된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지 않도록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의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 제 4조 [ 준용규정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약관을 따릅니다.